

대의원총회 규약

제정일: 2022년 2월 26일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의원 선거 및 대의원총회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대의원의 피선거권)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받는다.

제5조(대의원의 수)

대의원 수는 협동조합 기본법과 정관에 따라 선출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대의원의 선출 및 당선 기준)

- ① 조합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조합원이면 출마할 수 있다.
- ② 이사장과 이사, 감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 ③ 대의원이 되려는 자는 이사회에서 정한 출마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 ④ 대의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명부를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선출하되 위 조항의 기준에 따라 찬성표가 많은 순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⑤ 대의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선출하되 만약 출마자가 정원에 미달할 때는 투표하지 않고 부족한 대의원을 위 1, 2, 3항의 기준에 따라 이사회에서 지명한다.

제7조(선거관리자)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 위원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출된다.

제8조(후보자 등록기간)

선거공고에 따른 후보등록기간은 7일로 한다.

제9조(선거일)

- ① 대의원의 선거일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의원 총회 일정에 따른다.
- ② 선거일의 통지는 정관상의 총회 통지방법에 따른다.

제10조(대의원의 임기)

①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대의원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대의원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대의원총회 회의)

정관상의 총회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의결 사항)

의결사항도 정관상의 총회 의결사항에 따른다.

제13조(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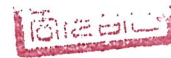
이사장이 대의원 총회 의장이 된다.

제14조(의결 정족수)

의결 정족수도 정관의 총회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간사)

- ① 대의원총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 운영업무 담당이 된다.
- ③ 간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의준비
 2. 의안작성
 3. 의사록 작성 및 보관
 4. 그 밖에 대의원총회의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